##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05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정점식·서일준·인요한

이인선 • 고동진 • 김 건

이상휘 · 서범수 · 최형두

성일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줌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 시설 보강,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ㆍ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u> &lt;신 설&gt;</u>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                 |
|                           | 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                 |
|                           | 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1항                |
|                           | 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농어업                  |
|                           | 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대통령                 |
|                           | 령으로 정하는 사고 예방에 필                 |
|                           | 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
|                           |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
|                           | <u>할 수 있다.</u>                   |
| 제19조(재정지원) ① (생 략)        | 제1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                   |
|                           | 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
|                           |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가                 |
|                           | 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                  |
|                           | 부를 지원하려는 경우 보험료                  |
|                           | 지원 비율 산정에 관하여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
|                           | 해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하                  |
|                           | <u>여야 한다.</u>                    |
| <u>②</u> ~ <u>④</u> (생 략) |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
|                           | 항까지와 같음)                         |